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 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②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일 때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담당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바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이나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 부담 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6%	(보험료 순위 0~25% 이하 : 본인부담률 6%)
	0%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본인부담률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차오름 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 356-0602-4971-93"으로 입금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받으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 요양 인정 또는 시설 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할 때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요양 고시 제19조 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 요양 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 인수자를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⑤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 ⑥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 요구 지양 부탁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 수급자 및 신원인수 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신원인수 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에게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4조 [계약의 조건 및 해지]

1. 계약 해지 요건

-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 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 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수급자가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7)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내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 인은 위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 ④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